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2026-12107-1호
(2026. 05. 18 ~ 2027. 05. 12)

# 『 신한 생계비계좌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 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 1. 상품개요 및 특징

- 상 품 명: **신한 생계비계좌**
- 상품특징: 1개월 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통장

## 2. 거래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

| 구 분 | 내 용 |
|---|---|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br>- 단, 외국인의 실명확인증표는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 |
| **예금과목** | 저축예금 |
| **가입방법** | 영업점, 신한은행 모바일앱<br>* 운영시간(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월~토 07시~21시30분)에만 신규 가능 |
| **이자산출근거** | 예금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여,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매 영업일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 모바일뱅킹 등에 게시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
| **이자지급방법** | 예금의 이자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셋째주 마지막 영업일에 계산하여 그 익일(원가일)에 원금에 더합니다. |
| **기본이자율 (2026.02.02 현재, 세전)** | 연 0.1% |
| **우대서비스** | 신한은행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한 마감 후 인출 수수료 면제 |

<table>
<tr><td>원금 및<br>이자지급제한</td><td>-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br>-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td></tr>
<tr><td>입금제한사항</td><td>-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생계비(250만원) 이내로 개인별 잔액 및 1월간(매월 초일부터 말일) 입금 금액을 제한합니다.<br>- 다만, 생계비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이나 생계비계좌에서 1월간 입금된 금액이 압류금지 생계비를 넘게되는 경우에도 은행은 이자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기지급된 이자는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br><br>[예시]
<table>
<tr><th>일자</th><th>입금액</th><th>출금액</th><th>잔액</th></tr>
<tr><td>1월 1일</td><td>1,500,000원</td><td>0</td><td>1,500,000원</td></tr>
<tr><td>1월 15일</td><td>1,000,000원</td><td>0</td><td>2,500,000원</td></tr>
<tr><td>1월 20일</td><td>500,000원주1) 불가</td><td>0</td><td>2,500,000원</td></tr>
<tr><td>2월 1일</td><td>0</td><td>500,000원</td><td>2,000,000원</td></tr>
<tr><td>2월 15일</td><td>300,000원</td><td>0</td><td>2,300,000원</td></tr>
<tr><td>2월 20일</td><td>0</td><td>2,300,000원</td><td>0원</td></tr>
<tr><td>2월 25일</td><td>2,500,000원주2) 불가</td><td>0</td><td>0원</td></tr>
</table>
주1) 1월간(매월 초일부터 말일) 입금한도 250만원 초과되어 추가입금 불가<br>주2) 기 입금된 금액(300,000원)이 있어 입금불능 처리되며, 최대 2,200,000원 입금 가능</td></tr>
<tr><td>거래제한사항</td><td>- 이 예금은 은행이 상계할 수 없습니다.<br>- 이 예금은 유동성한도대출의 모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br>- 이 예금은 만기시 원리금 자동입금 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br>- 신용카드 결제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하였을 때, 입금금액 제한으로 결제·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입금 금액 제한을 초과하는 결제·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고객이 영업점 창구에서 결제•납부금액을 직접 납부하거나 별도 지정계좌로의 입금 또는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br>※ 신용카드 결제대금의 연체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 및 약관에 따라 지연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함.<br>- 이 예금은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1월간 압류금지 생계비의 관리의무가 적용되는 계좌로, 해지 시 해당 월에는 전 금융기관에서 재개설이 제한됩니다.</td></tr>
<tr><td>예금해지 방법</td><td>영업점 및 신한은행 모바일앱에서 해지 가능합니다.<br>* 운영시간(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월~토 07시~21시30분)에만 해지 가능<br>* 비대면채널 해지 시 해지잔액을 입금할 수 있는 본인명의의 입출금통장 필요</td></tr>
<tr><td>예금 해지 시<br>불이익</td><td>해당없음</td></tr>
<tr><td>위법계약해지권</td><td>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td></tr>
</table>

| | |
|---|---|
| |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 **자료열람 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계약에 관련한 자료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br>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 **거래중지** | 예금잔액 및 입출금 거래가 없는 기간에 따라 거래중지계좌로 분리되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휴면예금 및 출연** | 편입 대상 아님 |
|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 불가 |
| **양도** | 불가 |
| **담보제공** | 불가 |
| **기타사항** | 공동명의 불가 |
| **예금자보호여부**<br>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1억원 |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3. 유의사항

- **이 설명서는「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신한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 ①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통장은 관련법령에 따라 입금된 예금과 이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없고, 압류에 의한 지급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 **이 통장은 은행이 상계할 수 없습니다.**

본 상품은 신한은행 고객솔루션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상담센터(1577-8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hinhan.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점 등을 통해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연장시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2026-12107-1호
(2026. 05. 18 ~ 2027. 05. 12)

# 『신한 생계비계좌』 요약 상품설명서

## ■ 기본 정보

| | | |
|---|---|---|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br>- 단, 외국인의 실명확인증표는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함. | |
| **입금제한** | 압류금지 생계비 이내로 개인별 잔액 및 1월간(매월 초일부터 말일) 입금 금액을 제한 | |
| **예금자보호** | O | 원금과 이자 포함 1억원까지 가능 |

⚠ **유의사항 | 반드시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www.shinhan.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제한사항 | - 전금융기관 1인 1계좌에 한하여 가입 가능<br>- 신용카드 결제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 결제·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취소 등이 발생 시 고객이 영업점 창구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별도 지정계좌로 입금 또는 수령해야 함<br>- 이 예금은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1월간 압류금지 생계비의 관리 의무가 적용되는 계좌로, 해지 시 해당 월에는 전 금융기관에서 재개설이 제한됨. |
| 은행의 상계 | 불가 |
| 양도 | 불가 |
| 담보제공 | 불가 |
| 유동성대출계좌 | 사용 불가 |

<부록>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 용어 | 설명 |
|---|---|
| **압류** |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 **가압류** |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 **질권설정** |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 **출연** |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br>▪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 **경과기간** |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br>*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